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66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4.
판 결 선 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4.자 재산세 13,09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6,189,520원, 지방교육세 2,618,29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 9. 5.자 재산세 28,350,120원, 지방교육세 5,670,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7. 기독교 복음에 입각한 교도소를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2003. 2.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교도소법'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교정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7. 1. 16.자로 변경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계약기간)

- ① 갑(법무부장관)이 을(원고)에게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는 기간(계약기간)은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성립일부터 12년으로 한다.
- ②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갱신을 허가하고, 갱신된 계약기간은 제1항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20년으로 한다(2014. 12. 11. 신설).

제34조(시설공사 등 비용)

- ① 다음 각호의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교도소, 직원숙소, 진입로와 그 부지 등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토지 매입이나 그 사용에 필요한 조치
 2. 토목·조경·건축공사
 3. 기계·전기·통신·오페수처리 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
 4. 기타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제44조(민영교도소 수용구분)

- ① 민영교도소에 수용할 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자 수형자로 한다.
 1. 범수 2범 이하
 2. 형기 7년 이하인 수형자로서 잔여형기 1년 이상
 3. 연령 20세 이상 60세 미만

제45조(수용정원)

- ① 민영교도소의 수용정원은 400명으로 한다.(2017. 1. 16. 변경)

제64조(운영경비)

- ① 갑은 매년 을에게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하며, 이 운영경비는 국가재정법상 일반회계에 속하는 교도행정예산에서 지급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운영경비 지급)

- ① 갑은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의 90%까지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교정 및 군사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2010. 12. 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축물에서 「소망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순번	대상 토지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1	■시 ■면 ■리 16-1	2002. 12. 10. 매매	2003. 2. 19.
2	같은 리 16-2	2003. 8. 13. 매매	2003. 8. 19.
3	같은 리 16-3	2002. 12. 10. 매매	2003. 2. 19.
4	같은 리 16-4		
5	같은 리 16-7		
6	같은 리 16-9		
7	같은 리 16-10		
8	같은 리 16-12		
9	같은 리 155	2009. 2. 20. 매매	2009. 4. 3.
10	같은 리 산19	2002. 12. 10. 매매	2003. 2. 19.

다. 피고는 과세기준일인 2016. 6. 1. 기준으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처분일	과세대상	재산세 (원)	지역자원시설세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
1	2016. 7. 4.	이 사건 건축물	13,091,480	6,189,520	2,618,290	21,899,290
2	2016. 9. 5.	이 사건 각 토지	28,350,120		5,670,020	34,020,140
		총계				55,919,43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30. 및 2016. 11. 3. 피고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8.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재차 불복하여 2016.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4.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가의 업무인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국가'가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고, 나아가 나머지 요건인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일 것', '유료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도 모두 구비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영교도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위하여 이와는 별도의 특례규정으로,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신설·규정하였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2항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축소하여 규정하였으며,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2항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재차 축소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국가'에는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2014. 12. 31.이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재산세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축물을 교정업무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곽태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8-07-26

판사 문중흠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끝.